

#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박광현<sup>o</sup>

<sup>o</sup>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e-mail: sanaigo@kwu.ac.kr<sup>o</sup>

## Right to be Forgotten in Cyberspace and Measures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Kwang-Hyun Park<sup>o</sup>

<sup>o</sup>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 요약 ●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법정정책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키워드:**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개인정보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인정보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정보통신망법(Information Communication Law), 디지털 장의사(Digital Undertaker)

### I. Introduction

인터넷의 발달은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의 확대에 이어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발전과 제4차산업혁명의 도래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온라인상의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라는 낙인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부터 발달해 온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프라이버시 개념으로 발전되었는데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정의된다.

사이버상의 과거 이력 및 개인 신상정보의 유출사고는 2차적 피해발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II.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 1. Domestic trends

최근 인터넷의 전세계적 발달에 따라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 장의사는 인터넷에서 저장, 유통되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구적인 파기를 대리해 주는 신종 직업으로, 고인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기록까지 가능하다. 제3자 또는 언론보도가 된 자신의 기록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인권의 사각지대를 보호할 수 있다. 물론 공공, 역사적 기록물의 경우 또는 타인에 대해 정당하게 표현한 경우, 국가에 대한 정당한 비판 등은 알권리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다.

우리나라에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권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에서 삭제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의 법적 근거에 대해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확장이라고 이해하는 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이해하는

견해 그리고 독자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견해 등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2005년 NEIS 사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2011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지금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의해 규율된 것을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오용·남용 등의 침해를 구제하였다.

이후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아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인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마이데이터 산업 및 제품개발이 활성화되는 장점도 있지만 민감정보를 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잊혀질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논의 및 학문적·기술적 차원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 2. Overseas trends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의 대부분이 사이버 공간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세상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은 다양한 교차상관관계(cross-correlation)를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인기록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송기술의 발전은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존재 의의가 있다. 주로 영미권은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를 강조하는 반면 서유럽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는 「EU 개인정보 보호 일반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 17조에 잊혀질 권리(Right to erasure(‘right to be forgotten’))를 규정하여 권리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는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 보호를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III. The right and duty to be forgotten in cyberspace as an information human right

최근 잊혀질 권리의 확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GDPR 제17조 제1항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정보의 수집 혹은 기타 처리가 그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성을 상실하였거나, 정보주체가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정보의 저장기간이 만료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삭제 및 확산 방지에 관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우리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문제가 존재한다. 잊혀질 권리와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등의 기본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결문제로서 우선 잊혀질 권리의 개념 정의 및 범위를 정하고, 둘째, 잊혀질 권리의 보호 필요성과 2차 피해발생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헌법상 충돌하는 기본권 간의 조화로운 해결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미 연방대법관은 ‘역동적 자유(active liberty)’의 개념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가 참여적 민주주의의 확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 기여도에 따라 공익과 사익이라는 이익형량을 통해 경중을 달리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법도 개인정보의 내용 및 범위를 교량하여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의 충돌시 해결방안을 개인정보보호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1. 공적인물이란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가 및 알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공적인물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공적 인물은 일반인에 비해 사생활 공개시 수인해야 할 범위가 넓다는 것으로 공적 인물이란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자발적으로 유명해진 인사와 범죄인과 그 가족 등 비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를 말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므로 수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권리포기 이론

자살과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언론이 공개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권리포기 이론이 있다. 그러나 자살자의 유족이나 친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므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3. 공익이론

교육적, 보도적 가치가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잊혀질 권리보다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공익 이론이 있다.

## 4. 인격형성론

잊혀질 권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국가적 영역 등으로 나누어 내밀영역에 근접한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를 우선하고, 국가적 영역에 가까운 경우에는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우선하자는 이론이다.

## IV. Conclusions

현재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 된 상황에서 모든 개인정보는 용이하고 신속하게 확산되어 타인에게 기억되고 기록된다. 비록,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대 인터넷 사회에서 ‘잊혀질 권리’의 보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잊혀질 권리와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등의 기본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역을 주체와 내용에 따라 분류한 다음 충분한 고찰을 통해 기본권이 충돌하는 법익 간의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하는 법정비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YSPark,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Korea with a Focus on Checking the Current Discussions and Exploring Future Directions”, Vol. 49, 49-50, 2016.
- [2] JR Choi, A Review on the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under the Korean Law, Vol. 15, No. 4, pp.20-25, 2019.
- [3] HBKwon, “Right to be forgotten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Korea: Focusing on the Leak of Private Information”, Vol.13, No.2, pp. 3-5, 2014.
- [4] MSHongn, “Attempts toward well-dying information: International trends surroun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Press Arbitration”, Volu31, No. 2, p. 21, 2011, .

- [5] YIKim/ YJ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Vol.27, No.1, pp. 79-81, 2021.